



2013 중소기업 재기(再起) 및 채무조정 제도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목 차 |

I 중소기업 재기지원 정책

1. 구조적 경영애로기업 건강진단	6
2.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7
3.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8
4. 중소·벤처기업 자산거래 중개장터	9
5. M&A 지원	10
6. 힐링캠프式 재기교육	11
7. 재창업 역량강화 교육	12
8. 재창업 자금	13
9. 재창업 전용 기술개발자금	15
10. 긴급경영안정자금	17
11. 재창업지원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19
12. 중소기업법률지원단 (법무부)	21

II 법인기업의 채무조정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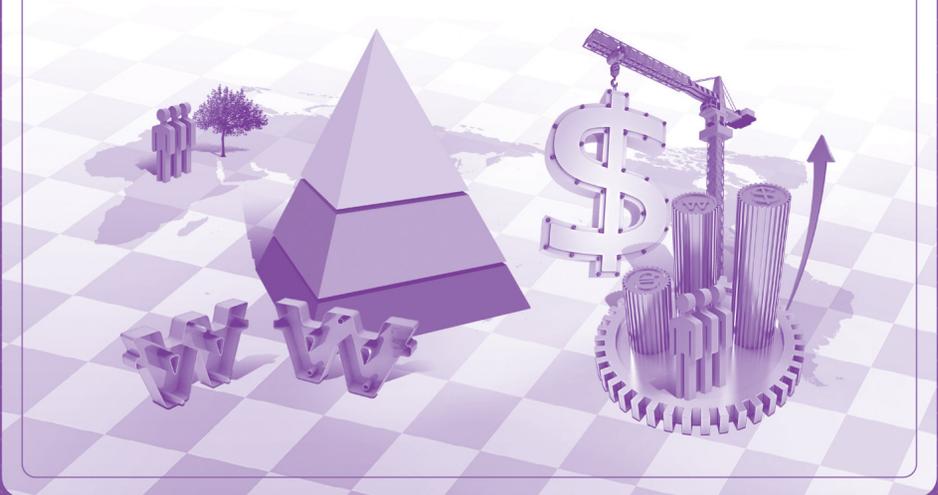
1. 중소기업 워크아웃 (사적 절차)	26
2. 기업 회생 (법적 절차)	27
3. 법인 파산 (법적 절차)	31
<참고1> 법인파산시 이해당사자별 장점	33
<참고2> 법인기업 채무조정제도 비교표	35

III 개인 및 개인사업자 채무조정제도

1. 프리 워크아웃 (사적 절차)	38
2. 개인 워크아웃 (사적 절차)	40
3. 개인 회생 (법적 절차)	42
4. 개인 파산 (법적 절차)	44
<참고3> 개인 채무조정제도 비교표	47

www.smba.go.kr

I. 중소기업 재기지원 정책



01

구조적 경영애로기업 건강진단

구조적 경영애로기업(신용등급 B, C, D 등급)의 기업구조 개선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 전반 진단 후 정상화(또는 회생·재기) 처방

- **신청대상** : 은행권의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된 중소기업 중 주채권은행의 추천을 받은 기업

- 1) C등급 중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채권은행자율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동관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2) B등급 중 '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지침'에 따라 Fast-Track 자율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동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3) 자체 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권고기업

- **수혜내용** : 구조적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기업구조 개선진단 및 체질개선 처방을 통해 정상화 추진

- **진단 및 처방** : 진단기관과 전문가의 기업구조 분석진단 및 건강진단을 통해 구조개선 처방전* 제시
 - * 품목·사업전환, 사업재구축, 자산매각, 사업장 통합, 자본증자, 판관비 절감 등
- **비용보조** : 건강진단시 소요되는 비용 (30만원/1MD) 지원
 - * 진단일수는 하루 8시간을 1MD로 인정하며, 최대 6MD지원
- **연계지원** : 정상화 개연성이 높은 기업은 자금, 보증 등 맞춤형 지원하고, 정상화가 어려운 기업은 회생·재기 처방

- **신청방법** : 건강진단 신청서와 주채권은행이 발행한 추천공문을 관할 소재지의 해당 진단기관에 방문 신청(매월 11~20일)

- * 4개 진단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www.smba.go.kr),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www.sbc.or.kr) (별표2)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www.kodit.co.kr)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www.kibo.or.kr)

- * 신청서 양식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www.bizdoctor.go.kr) → 기업건강진단신청 → 하단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 자료 받기'에서 확인

02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사업정리(청산·파산) 또는 기업회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신청대상

-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해 ‘회생 및 재기’로 진단된 기업
 - *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기업 문제점을 도출·치유해 주는 시스템☎1357
- 3년간 연속 적자, 매출급감 등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 * 경영위기 중소기업 : 이자보상배율1이하 (영업이익 < 이자비용)거나, 이자 비용연체 기업, 유동성위기기업, 중진공 상담결과 전문가 진단 필요기업 등

■ 지원내용

-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사업정리(청산·파산) 또는 회생가능여부에 대해 정책정보를 제공
 - * 전문가 : 법원등록 조사위원(3년이상), 회생·파산전문 회계사(경력3년이상)

■ 지원금액 : 전액 정부 지원(부가세 기업 부담)

■ 지원절차

신청·접수 컨설팅 승인	수행기관 선정·승인	협약 및 컨설팅	진로제시
신청서 제출 대상여부 검토 중소기업진흥공단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신청기업이 선정 주관기관에서 승인	협약과 동시에 컨설팅(2~5일) 수행기관 → 신청기업	청산 및 회생여부에 대한 진로제시 중소기업진흥공단

* 진로제시컨설팅 이후 회생컨설팅 지원가능 기업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회생컨설팅 지원 가능

■ 신청 및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부

(전화 : [별표 2], 홈페이지 : www.sbc.or.kr)

* 필요시 재기컨설턴트 pool로 구성된 재기자문단과 상담할 수 있음

03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전문가 상담·절차 대행 등을 지원

■ 신청대상

- 진로제시컨설팅 후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단된 중소기업
- 다만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사건을 신청한 경우,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지원금액 : 컨설팅 소요금액의 70%, 최대 3천만원 한도

* 지원 초과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

■ 지원기간 : 최대 9개월 (필요시 3개월 연장가능)

■ 지원절차

신청·접수	컨설팅 승인	수행기관선정 및 수행계획서 수립	협약체결	기업부담금 납부	컨설팅 실시
신청서 제출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컨설팅 승인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계획서 제출	지원기업/ 컨설팅사/ 주관기관	부담금 납입 및 증빙서류 제출	중간점검, 완료점검
신청기업→ 중진공	중진공	신청기업/중진공 수행기관→중진공	중진공	납입:수행기관 증빙:중진공	중진공

* 수행기관 :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또는 변호사)이 공동으로 협업하여 추진

■ 컨설팅 범위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시부인표 작성 ■ 관계인집회 관련 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심문 답변서 ■ 관리인 조사보고서 작성 ■ 회계세무 자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목록 작성 ■ 회생계획안 작성 |
|--|--|---|

■ 신청 및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전화 : [별표 2], 홈페이지 : www.sbc.or.kr)

04

중소·벤처기업 자산거래 중개장터

휴·폐업시 보유자산의 신속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중소·벤처기업 자산거래 중개장터를 구축하여 기계설비, 공장, 원자재, 무형자산 거래지원

■ **이용대상** : 사업전환기업, 회생기업, (재)창업기업, 일반중소기업 등 유휴자산의 매매를 원하는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 기계설비, 공장, 원자재, 무형자산의 매각·매입 물건 정보 제공
- 입찰정보 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자산매각 정보)
- 유휴자산 매입·매각시 필요한 감정전문가 정보 등

■ **이용방법**

- 1) 회원가입 : 중소·벤처기업 자산거래 중개장터 사이트
(www.joonggomall.or.kr) 회원가입
- 2) 정보등록 : 매매를 원하는 자산 정보를 사이트에 직접 등록
- 3) 자산매매 : 매매하고자 하는 자산을 검색 후, 거래당사자간 매매

■ **담당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
(전화 : 02-769-6806, 홈페이지 : www.joonggomall.or.kr)

05

M&A 지원

M&A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중개기관의 상담, 기업진단 및 계약 성사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M&A 성공률 제고

■ **신청대상** : M&A Info-market에 매수·매도기업으로 등록하고, 등록된 중개기관을 통하여 M&A가 성사된 기업

* M&A Info-market : M&A 중개기관 정보, M&A 매수·매도 희망기업 정보 등을 제공하는 M&A거래 사이트 (등록 중개기관 60개사 내외, www.mna.go.kr)

■ **지원내용** : M&A추진에 필요한 기업실사(가치평가) 및 분석, 계약서 작성 및 검증 등에 소요된 총 중개수수료의 60%

* M&A성사건 당 1천만원 한도, 복수 중개기관 경우 수수료 비율에 따라 지급

■ **신청절차** : M&A 성사기업이 중진공에 M&A계약서를 제출하면, 중진공 선정 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기업 선정

* (선정위원회) 중진공 M&A지원센터 및 M&A전문가 등 5인 이상 참석

■ **신청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와 상담 후 신청 (전화 : 02-769-6887, 홈페이지 : www.mna.go.kr)

06

힐링캠프식 재기교육

실패 중소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4주간 합숙을 통해 자아성찰, 심리치유 등 재기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

- **신청대상** : 중소기업 경영에 실패 하신 분 또는 경영위기에 직면하여 위기 극복이 필요한 사업 자

* 고의부도, 횡령, 사기 등 부도 및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교육과정**

- 교육비 : 전액 무료
- 교육장소 : (재)재기중소기업개발원 죽도연수원(경남 통영시 매죽리 위치)
- 교육기간 : 4주간 합숙교육, 연 3회(2, 6, 10월) 개최
- 교육내용 : 명상, 자기성찰, 심리치유, 자신감 회복, 사업구상 등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변화의 필요성 인식	자기성찰	통찰 및 각성	비전수립 및 실행
전문 강의, 자기성찰, 그룹토의 등	전문강의, 심리치료사의 강의 및 상담, 자아성찰 명상, 코칭전문가의 1:1코칭 등		재기지원 관련단체 (중기청 등) 간담회, 사업계획 수립 및 발표 등

- **연계지원**

- 힐링캠프식 재기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재창업 역량강화 교육』을 무료로 지원

- **신청방법** : 재기중소기업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전화 : 051-316-4050, 홈페이지 : www.jaegi.org)

07

재창업 역량강화 교육

재창업에 필수적인 내용의 교육과 사업계획 컨설팅을 통해 경영실패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역량강화 지원

- **신청대상** :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의 힐링캠프식 재기교육 이수자
- **교육내용** : 마케팅·채권관리 등 재창업 후 경영에 필수적인 내용 및 사업계획 수립 관련 1:1 컨설팅(무료 합숙교육, 4박 5일 과정, 연 3회, 회당 30명)

1일차	2일차	3-5 일차
신용관리개념 및 관리방안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 컨설팅, 사업계획서 발표
중소기업 정책지원제도		
채권관리 및 회수전략	지속적 경쟁우위전략과 마케팅 전략	

- **신청방법** : 중진공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와 상담 후 신청
(전화 : 02-769-6663)

08

재창업 자금

정직한 실패 기업인에 대하여 신용회복과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 자금을 지원

- **신청대상**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1)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 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 2)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 3)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 4)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5)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지원내용** : 재창업에 소요되는 운전·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10억원)
- 용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단, 기업편의에 따라 대리대출 가능)

■ 지원절차



* 평가/지원결정 : 대상기업의 사업성, 기술성,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여 최종 산출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

- 신청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상담 후 신청
(전화 : [별표 2], 홈페이지 : www.sbc.or.kr)



재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 신청대상

- (주관기관)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

- 1)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 (재창업자 요건) 실패 기업의 업종이 중진공 용자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며 영업 실적을 보유(기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 2)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 또는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결정을 받은 자
- 3)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4)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5) 재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의 경우는 지원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체납사실이 없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체납세금·4대 보험·과태료 등에 대한 분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등록으로도 가능)
- 6)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 (공동개발기관) 재창업기업의 우수 아이디어·기술의 공동연구를 통해 시제품 개발 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대학 및 연구소 등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 지원내용 : 개발 총 소요비용의 90%

- * 과제당 1억원, 개발기간 최대 1년
- *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현물 또는 현금으로 부담)을 부담하되, 공동개발 기관(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 재창업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기술료 징수 면제
- 신제품의 창의성·혁신성 및 아이디어가 우수한 시제품 개발 지원을 통해 실패 중소기업인의 재기(再起)를 지원하며, 7대 전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매년 초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공고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상담 후 온라인 신청
(전화 : 02-3787-4000, 홈페이지 : www.smtech.go.kr)

10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인 경영애로로 자금경색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신청대상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크고,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1)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2)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진공 집중관리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 3)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기업구조개선진단 추진기업
- 4) KIKO 등 환해지 파생상품 피해 기업 또는 외화대출에 따른 피해 기업
- 5)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 6)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7)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
- 8) 전년동기(동월) 대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전년도말 또는 직전 분기말 당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9) 주요거래처의 도산 또는 결제조건 악화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 지연기업
- 10) 기술유출 피해기업
- 11) 123개 개성공단 가동기업의 모기업('13.4.3 기준) 중 중소기업
- 12)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등

■ **지원내용** :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생 채무 상환을 위한 비용은 담보부 대출방식이며 연간 30억원 이내

■ **신청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상담 후 신청

(전화 : [별표 2], 홈페이지 : www.sbc.or.kr)



11

재창업지원위원회

신용회복이 필요한 중소기업인(법인·개인) 중 재창업 의지가 확고하고 사업 계획 이 충실한 사람을 선별하여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 지원

■ **신청대상** : 중소기업 경영실패로 주 채무와 보증채무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보유중인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지원내용** : 경영자 신용회복지원과 재창업자금(보증·융자) 지원

1)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위)

- 채무감면 : 이자 전액, 상각채권의 원금 최대 50% 감면
- 상환유예 : 최장 3년(채무 2억원 이하), 최장 5년(채무 2억원 초과)
- 상환연장 : 최장 8년(채무 2억원 이하) 최장 10년(채무 2억원 초과)

* 기준 채무는 조정된 채무를 기준, 유예기간 중 이자는 면제

2) 재창업자금지원 (보증 : 신보·기보, 융자 : 중진공)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0억 이내, 시설자금 30억원 이내
- 신청자격 : 사업자 등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창업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예비재창업자 포함)

* 대출조건 및 금리(보증료) 등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서 발급 또는 대출기준에 따름

■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전화 : 1600-5500, 홈페이지 : www.ccrs.or.kr)

구 분	관 련 서 류
신 청 서	신용회복지원(상담)신청서
신 분 증 명 자 료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재 산 증 명 자 료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재 창 업 자 료	재창업 자금/보증 신청서, 재창업 사업계획서
기 타	폐업증명서(폐업시)

■ 신청절차



- ▶ 재창업자금지원(보증/대출)과 신용회복지원(채무조정)은 각각 신청
- ▶ 재창업자금지원은 보증(신보, 기보) 또는 용자(중진공)를 선택하여 신청

12

중소기업법률지원단(9988법률지원단)

지원단 소속 전문가가 중소기업 설립·운영·소멸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 법률 상담·지문서비스를 지원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별표 1]

* 단,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은 제외

■ 지원내용

1)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 지원 (무료)

- 기업설립·정관설계, 주식분할 및 소각, 지배구조 개선, 채권회수, 지적재산권 보호·파산 및 회생 등

* 다만, 기업 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영자 개인의 법률문제, 일반 형사사건(불법행위로 인해 대표자나 종업원이 고소·고발된 사건 등), 임금체불이나 해고 등 근로자를 상대로 한 분쟁은 상담대상에서 제외

2) 중소기업법률자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유료)

-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변호사 자문 비용 중 최대 200만원 지원
- * 신청기업은 총 비용의 30%와 부가가치세(10%)를 자기부담금으로 선납
- * 변호사 자문비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신청기업 부담

■ 신청방법 : 중소기업법률지원단에 상담 후 신청

(전화 : 02-3418-9988, 홈페이지 : www.9988law.com)

별 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규모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교육 서비스업	P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비고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다.

별 표 2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접수 및 문의처

□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 : 02-769-6802~5, 6661~3

지역본(지)부 (소재지)	전 화	지역본(지)부 (소재지)	전 화
서울 (목 등)	02)6678-4127, 37	경 북 (구미시)	054)476-9321~9
서울동남부 (서초구)	02)2156-2222~3	경 북 동 부 (포항시)	054)223-2047~8
서울 북 부 (여의도)	02-769-6816, 26	경 북 남 부 (경산시)	053)212-3300~01
인 천 (연수구)	032)450-0521~3	강 원 (춘천시)	033)259-7600
인 천 서 부 (연수구)	032)450-0560	강 원 영 동 (강릉시)	033)655-8870
경 기 (수원시)	031)259-7911~5, 7921~5	광 주 (광주시)	062)600-3000
경 기 동 부 (광주시)	031)628-6888	전 남 (무안군)	061)280-8000
경 기 서 부 (시흥시)	031)496-1083~4	전 남 동 부 (순천시)	061)724-1056
경 기 북 부 (고양시)	031)920-6700	부 산 (사상구)	051)630-7400
대 전 (대전시)	042)866-0114,23	부 산 동 부 (해운대구)	051)712-9670
충 남 (천안시)	041)621-3687	울 산 (울산시)	052)703-1100
충 북 (청주시)	043)230-6811~2	경 남 (창원시)	055)212-1350
충 북 북 부 (충주시)	043)841-3600	경 남 동 부 (김해시)	055)310-6600
전 북 (전주시)	063)210-9900	경 남 서 부 (진주시)	055)756-3060
전 북 서 부 (군산시)	063)460-9800	제 주 (제주시)	064)751-2053~7
대 구 (대구시)	053)601-5300		

별 표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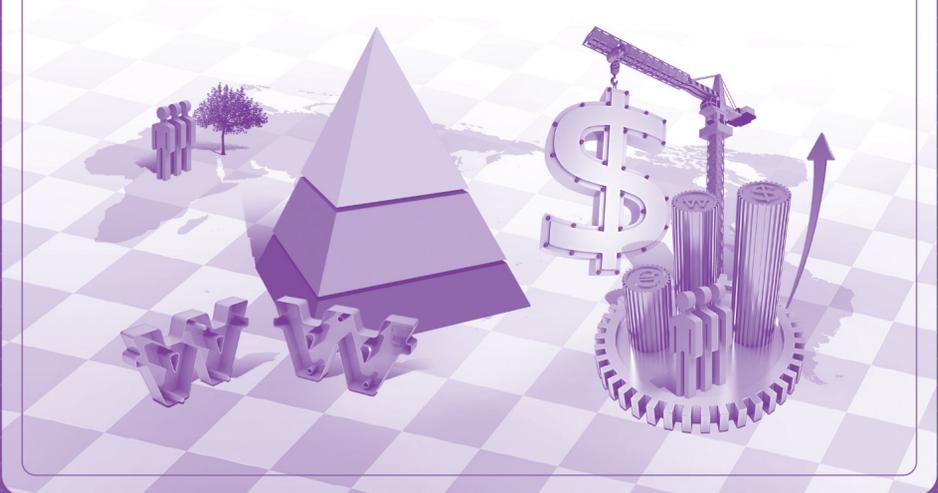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지역본(지)부	관 할 구 역
서울 지역본부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인천 지역본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 지역본부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대전 지역본부	대전시,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충남 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충북 지역본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북 지역본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대구 지역본부	대구시
경북 지역본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강원 지역본부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광주 지역본부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 지역본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부산 지역본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 지역본부	울산시
경남 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제주 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Ⅱ. 법인가업의 재무조정제도

- ◆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법인은
 - ① 채권 금융기관과 워크아웃을 체결하거나
 - ② 법원의 회생절차 신청 등 구조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업의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 상환

- ◆ 그러나 구조조정에 실패하고 향후에도 채무상환이 불가능하여 사업을 정리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원에 파산절차를 신청하여 파산관재인을 통해 보유한 재산을 모두 매각하여 채무자에게 상환한 후 법인 해산



01

중소기업 워크아웃 (사적 절차)

채권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기존채무, 대출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을 해주고, 기업은 자구노력 하여 채무를 상환해 주는 사적절차

■ 신청대상 : 단기 채무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총 채무액 500억원 미만)

* 주채권 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부실징후기업'인 경우도 신청대상

■ 수혜내용

• 협약가입 채권 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채권행사유예, 이자감면 등), 출자 전환, 신규 대출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채무조정

* 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3개기관

■ 신청방법 : 대표 경영자가 주채권 은행과 협의 후 신청

■ 신청절차



* 금융기관 채무 50억 이상 500억원 미만 기업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 장점 및 단점

- 장점 :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긴급 자금 지원 가능
법적절차(법인 회생, 파산)에 비해 신속한 구조조정 가능
- 단점 : 채권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권 간섭 발생 가능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 대상

02

기업 회생 (법적 절차)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및 결의를 거쳐 인가된 회생 계획안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수익 등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

- 신청대상 : 경영위기를 겪는 중소기업
- 수혜내용 :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경영하여 채무를 상환하며, 통상 회생 계획은 일부 출자전환 후 일부 현금변제(최장 10년 분할 변제)로 진행
- 신청방법 : 채무기업, 채권자 등이 관할법원에 신청
 - * 회사 출자지분 또는 주식의 1/10이상 소유자, 또는 5천만원 이상 채권자 (주식/유한회사의 경우 회사 자본총액의 1/10이상 금액을 보유한 채권자)

구 분	관 련 서 류
회 사 조 직 및 업 무 현 황	상업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연혁, 조직도 및 사무실현황, 임직원 명부 및 주주명부, 사원명부, 노동조합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 회사소개서 및 안내자료
자 산 · 부 채 현 황	과거 5년간 재무제표, 과거 3년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최근 1년간 은행거래 내역서, 주요 자산목록, 채권내역, 부채내역
사 업 동 향	주요거래처 명부, 과거 5년간 비교대차대조표 및 비교 손익 계산서, 과거 1년간 월별 자금 운용 실적표 및 향후 1년간 월별 자금수지계획표, 향후 10년간 자금수지계획표
사 업 의 경 제 성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산정표, 향후 사업계획서, 추정손익 계산서, 추정자금수지표, 자금조달계획서 및 예상자금수지표, 실사보고서
기 타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이사록 및 인감증명서 등

- 담당기관** : 채무기업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관할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별표 3] ‘지방법원의 관할지역’ 에서 확인)

■ 신청절차

- 1) 기업회생 신청단계 : 약 1주일 ~ 1개월 소요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 ▶ 신청비용** : 조사위원보수 및 송달료 등 최소 1,500만원 소요

채무기업 자산총액	예납금 (조사위원 보수)	채무기업 자산총액	예납금 (조사위원 보수)
50억원 미만	1,500만원	1,000억원~3,000억원	5,700만원
50억원~80억원	1,800만원	3,000억원~5,000억원	7,700만원
80억원~120억원	2,700만원	5,000억원~7,000억원	9,200만원
120억원~200억원	3,200만원	7,000억원~1조원	10,000만원
200억원~300억원	3,900만원	1조원~2조원	11,000만원
300억원~500억원	4,500만원	2조원 이상	12,000만원
500억원~1,000억원	5,000만원	2조원 이상시, 1조원당 1,200만원 추가	

- ▶ 원활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으나 요건은 아님 (보통 예납금의 2배 이내 비용발생)**
- ▶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진로제시컨설팅, 회생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도산 전문가(법무법인 등) 선임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의 최대 3,000만원 지원가능 (본서 7~8pg 참고)**

2) 신청기업 조사단계 : 약 2개월 소요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제 1회 관계인 집회까지)



- ▶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채무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음
- ▶ 제1회 관계인집회에서 보고된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리인 (통상 기존 경영자)이 회생계획안을 작성

3) 회생계획 작성 및 인가 단계 : 약 2개월 ~ 3개월 소요

(제 1회 관계인집회 이후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 ▶ 관리인은 회사를 지속적으로 경영하면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 변제 등을 수행하고, 정상적으로 수행한 경우 절차 종결

■ 제도 이용시 장점 및 단점

- 장점 :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서 회사 경영을 지속하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일률적인 채무조정가능(사채포함)
채권자는 채무자 파산보다 더 많은 채권회수 가능
- 단점 : 도산전문가 자문료, 예납금 등 일정 수준의 자금이 필요함

Q&A

*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란?

- 계속기업가치 : 기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향후 10년간 창출하는 영업이익(+순자금유입)을 현재가치화한 합계
- 청산가치 : 기업이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현금화한 금액의 합계
- 따라서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기업은 → 회생신청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기업은 → 파산신청



03

법인 파산 (법적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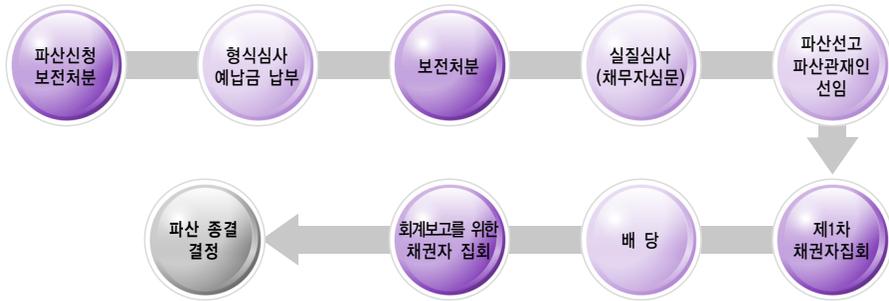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이 사업을 중단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기업의 재산을 모두 매각하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한 후 해산

- 신청대상 :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상태이고, 회생이 어려워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업
- 수혜내용 : 채무기업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매각·배당
- 신청방법 : 채무기업의 경영대표자 또는 채권자가 관할법원에 신청

구 분	관 련 서 류
회사조직 및 업무현황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업연혁, 회사소개서 및 안내 자료, 조직도 및 사무실현황, 대표이사, 주요임원 이력서, 임직원명부,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취업규칙·퇴직금규정·단체협약 등, 증자과정표 및 실증자액 사용처, 공장등록증, 계열사 및 관계 회사현황, 주거래은행 및 담당연락처, 회사 소재지 관할 우체국과 전화국 주소 및 연락처
재무관련 자료	과거 5년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 계산서
자산관련 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감정평가서, 자동차(지게차)등록원부, 특허·상표·디자인 등록증 및 등록원부, 출자좌수증명원(건설업), 임대차 계약서, 최근 1년간의 예금 및 증권의 잔고내역과 입출금거래내역서, 각종 보험증권 및 보험해약환급금 예상확인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 재활용센터 견적서(비교견적 포함)
부채관련 자료	담보채무현황, 일반채무현황, 우선권채무현황, 어음명세서, 채권자현황, 국지방세 및 4대 보험 등 미납/완납 증명서
기 타	현재 소송중인 사건의 소장·답변서·준비서면, 과거 소송사건의 판결문·결정문, 주요제품(매출)의 내용·매출품·거래처,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및 그 경과, 이사회 의사록

■ **담당기관** : 채무기업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관할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별표 3] ‘지방법원의 관할지역’ 에서 확인)

■ **신청절차** : 신청~파산선고까지 약 1개월
파산선고~종결까지 약 1년 6개월 소요



- ▶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극히 적어 조세, 임금, 파산 절차의 비용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파산절차 폐지
- ▶ 신청 비용 : 최소 500만원 소요

채무기업 부채총액	예납금	채무기업 부채총액	예납금
5억원 미만	500만원	100억원~500억원	3,000만원
5억원~10억원	700만원	500억원~1,000억원	4,000만원
10억원~50억원	1,200만원	1,000억원 이상	5,000만원
50억원~100억원	2,000만원		

- ▶ 법인은 파산·종결하면 해산하여 법인격이 소멸함 (별도의 면책 절차 불필요)

■ **단점**

- 파산절차 종결 또는 폐지와 함께 법인 해산으로 동일 사업으로 계속경영 불가
- 법인 파산일지라도 면책판결을 받지아니한 대표이사 및 주주의 연대보증 책임은 남아있음

참 고 1

법인파산시 이해당사자별 장점

□ 법인 도산시 발생하는 문제점

당사자	도산시 발생하는 문제
도산기업의 대표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권자들의 채무상환 독촉 임금미지급, 어음·수표 부도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 연대보증으로 인한 개인채무의 급증
도산기업의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 체불
도산기업의 채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채권회수의 어려움 채권자 간의 불공평한 변제 부실채권에 대한 회계처리

□ 도산기업이 법인파산 활용 경우 장점

당사자	법인파산 활용시 장점	파산선고의 효력
도산기업의 대표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에서 벗어남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소송을 미연에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산기업 모든 자산의 관리처분권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귀속되며 투명·공정하게 채권자에게 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형사처벌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도수표, 조세 체납 등으로 인한 체벌 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부담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 지방세는 우선 변제하여 납세경감 파산절차 중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도산기업의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당급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지급의 우선적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의 임금은 우선하여 전액 지급
도산기업의 채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비용, 고효율의 공정한 포괄적 강제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산절차는 법원의 감독 하에 파산관재인이 신속·공정하게 업무를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산기업에 대한 채권을 소득세·법인세에서 대손금으로 처리 부가가치세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아 감면

Q&A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란?

- 지급불능 : 채무자의 변제능력 부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
- 지급정지 : 지급불능 상태를 외부에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
- 채무초과 : 부채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 채무의 초과 : 부채의 총액 > 자산의 총액
 - 부채의 총액 : 기업이 실제로 변제해야 하는 금액
 - 자산의 총액 :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

Q&A

* 파산관재인이란?

- 법인파산사건의 구체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자로 주로 변호사임
-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신청기업의 재산을 조사·일임 관리하고 확보된 채무기업의 모든 재산을 현금화(매각)하고 채권자에게 채권우선순위에 의해 변제하는 일을 함

Q&A

* 청산과 파산의 차이

- 청산이란 기업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기업이 스스로 청산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정리하여 채무 변제 후 잔여 재산을 주주들에게 배당한 후 법인을 정리 (재산>채무)
- 파산이란 기업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 완전하게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법적으로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감독 하에 재산을 정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채무를 변제한 후 법인을 정리 (재산<채무)

참 고 2

법인기업 채무조정제도 비교표

구 분	중소기업 워크아웃	기업회생	기업파산
	계속가치>청산가치	계속가치>청산가치	계속가치<청산가치
대 상	총 채무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 중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 초과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
대상 채무	채권은행협의회 가입 금융기관의 채무	기업의 모든 채무	기업의 모든 채무
내 용	회생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과 채권금융 기관이 상호 조정하여 경영정상화 계획 실행	회생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이 회생계획 대로 경영을 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채무는 면책	구조조정에 실패한 회생 불능기업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 변제하고, 해산하여 소멸
감독주체	채권보유 금융기관 (사적조정)	법원 (법적조정)	법원 (법적조정)
채무조정	해당 금융기관의 채무 채권행사유예, 채무조정, 신규대출, 이자감면, 출자 전환 등 제한적인 채무 조정	기업의 채무를 영업이익 으로 상환할 수 있는 범 위 내에서 상환, 나머지 는 탕감 혹은 출자전환	기업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분배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적 유동성부족 완화 기업회생에 비해 신속한 구조조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적인 영업가능 강제집행 등 무분별한 개별적 집행 중지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권자/채무자 세금혜택 회생에 비해 절차 간편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권 금융기관에 의해 경영권 포기 또는 간섭 금융기관 이외 상거래 채무 등은 조정 불가능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	동사업으로 계속경영 불가 (법인의 해산)
소요기간	채무 변제시까지	회생계획기간 (보통10년)	보통 1~2년

별 표 3

지방법원의 관할지역

지방법원	관 할 지 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전지역 (경기도, 강원도 소재 기업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신청가능)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고양시, 파주시, 강원도 철원군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수원지방법원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오산시, 의왕시, 군포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평택시, 안성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춘천지방법원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횡성군,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연기군,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공주시, 청양군, 논산시, 부여군, 계룡시,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천안시, 아산시
청주지방법원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충주시, 음성군, 제천시,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대구지방법원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경주시, 포항시, 울릉군,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부산지방법원	부산광역시
창원지방법원	창원시, 마산군, 진해시, 김해시, 함안군, 의령군,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밀양시, 창녕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울산지방법원	울산광역시, 양산시
광주지방법원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전주지방법원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암원시, 장수군, 순창군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Ⅲ. 개인 및 개인사업자 채무조정제도

- ◆ 경영 및 가계상황이 악화되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 ① (중·단기 채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본인의 채무 상환 능력에 맞게 조절하여 채무를 상환
 - ② (장기 채무) 소득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최장 5년에 걸쳐 상환하고, 면책절차를 통해 잔여 채무를 면제받음

- ◆ 그러나 채무과다로 향후에도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파산을 신청하여 보유 재산을 모두 채권자에게 상환한 후 면책절차를 통해 잔여 채무는 면제받게 됨



01

프리 워크아웃 (사적 절차)

채무 상환이 어려운 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변제기 유예 등의 사전 채무조정을 통하여 연체 장기화 방지

■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1)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 2)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총 채무액 5억원 이하
- 3) 최근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이하
- 4) 부채상환비율이 30%이상(연간 채무상환액(연체금액 포함)이 연간 총소득액(세전 기준) 대비)
- 5) 보유자산가액(부동산은 공시지가기준)이 6억원 미만
- 6) 사전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채무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수혜내용

- 채무감면 : 연체이자 감면 (원금감면 없음)
- 상환연장 : 무담보채권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
- 상환유예 : 최장 1년 이내 (유예기간 이자율 연 3%)
- 이자율완화 : 최초 약정이자율의 50% 적용 (최저이자율은 연 5%)

■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에 온라인/방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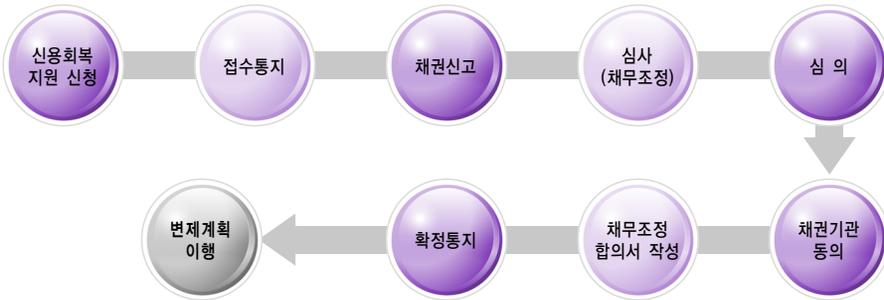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www.ccrs.or.kr 에서 확인가능)

구 분	관 련 서 류
신 청 서	신용회복지원(상담)신청서
신분증명자료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재산증명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담당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전화 : 1600-5500, 홈페이지 : www.ccrs.or.kr)

■ 신청절차 : 신청부터 확정통지까지 약 2개월 소요



■ 확인사항

- 대상채무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회원금융기관 채무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회원금융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신용회복지원제도] → [협약가입기관 안내]에서 확인 가능
- 신용정보 : 프리워크아웃 지원 확정시 “연체 등” 정보 미등록
 - * 지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연체 등” 정보 등록

Q&A

* 신용정보에서 “연체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신용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가 국내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받아 관리 (www.credit4u.or.kr에서 조회가능)
- 과거 “신용불량자” 로 불리던 명칭을 “연체 등” 으로 대체하며, 해당 정보 등재시 경제적 활동에 불이익

02

개인 워크아웃 (사적 절차)

채무상환이 어려운 3개월 이상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 상환 도모

■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1)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정보 등록된 경우
- 2)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

■ 수혜내용

- 채무감면 : 이자는 전액,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에 한하여 최대 50%까지 감면
- 상환연장 : 최장 8년 내 (차상위계층 이하는 최장 10년)
- 상환유예 : 최장 2년 내 (유예기간 이자율 연 2%)
- 이자율완화 : 최초 약정이자율의 50% 적용 (최저이자율은 연 5%)

■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에 온라인/방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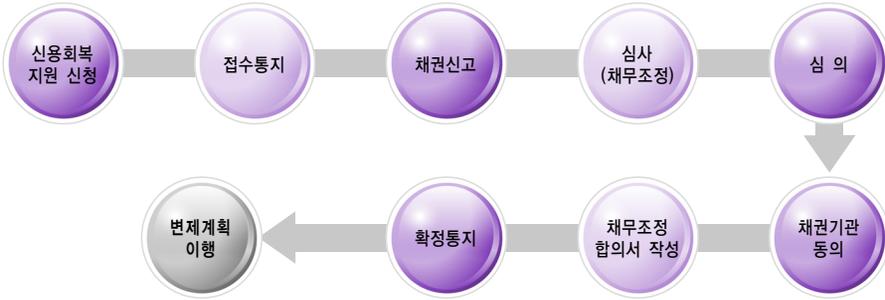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www.ccrs.or.kr 에서 확인가능)

구 분	관 련 서 류
신 청 서	신용회복지원(상담)신청서
신분증명자료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재산증명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담당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전화 : 1600-5500, 홈페이지 : www.ccrs.or.kr)

■ 신청절차 : 신청부터 확정통지까지 약 2개월 소요



■ 확인사항

- 대상채무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회원금융기관 채무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회원금융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신용회복지원제도] → [협약가입기관 안내]에서 확인 가능
- 신용정보 : 워크아웃이 확정되면 모든 “연체 등” 정보는 해제, “신용회복 지원 중” 정보 등재
 - * 조정된 채무를 2년 이상 상환하면 “신용회복지원 중” 정보 삭제

03

개인 회생 (법적 절차)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 중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일정기간(3~5년)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채무 면책가능

- **신청대상** : 일정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과다 채무(무담보 채무 5억, 담보부채무 10억이하)로 인해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
- **수혜내용** : 월 소득에서 생계비(통상 최저생계비의 150%)를 공제한 가용 소득으로 최장 5년간 채무상환 후 잔여채무 면책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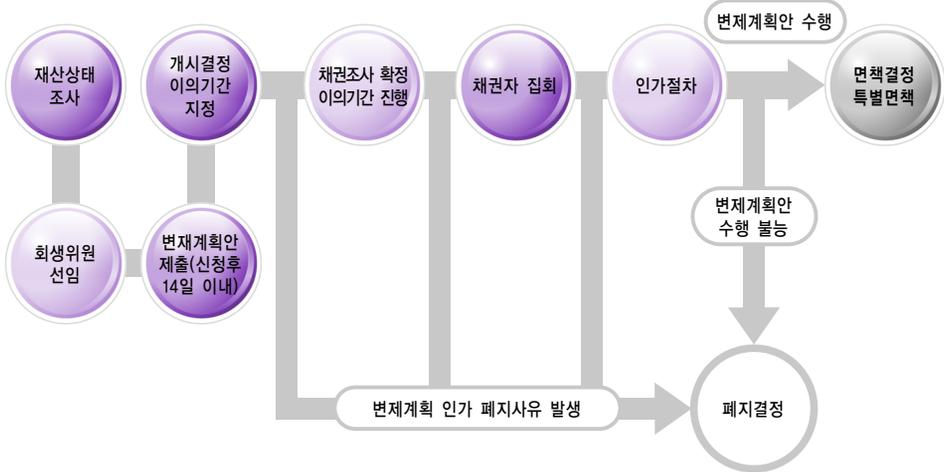
구 분	관 련 서 류
신 청 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채 권 자 자 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증명자료	재산목록,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수입·지출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지출예상자료	변제계획 수행시 예상 지출목록
소득증명자료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서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자 소득 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진술서 및 확인서
진 술 서	현재의 직업, 경력, 수입과 생활상황, 부채상황 및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경험,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신분증명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자료	변제계획안 (신청 이후 14일 이내 제출)
기 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Quick Menu의 [양식모음]에서 확인

■ 담당기관 : 채무자 주거지 관할 지방법원

([별표 5] ‘지방법원의 관할지역’ 에서 확인)

■ 신청절차 : 개인회생신청부터 변제계획안 인가까지 약 6개월 소요



- ▶ 인지 및 송달료(채권자 수에 비례하여 증가), 회생위원 보수 등 비용발생
- ▶ 변제계획은 원칙적으로 향후 5년을 예상하여 작성
- ▶ 변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시 잔여채무 면책 가능

■ 확인사항

- 대상채무 :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
 - 신용정보 : 변제계획 인가시 모든 “연체 등” 정보 해제, “개인회생 인가자” 공공정보 등재
- *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한 경우 “개인회생 인가자” 정보 삭제

Q&A * 다른 기관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중에도 개인 회생신청이 가능한가?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절차를 이용 중인 자,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자도 신청 가능 (단, 타 채무조정 절차 중지)

04

개인 파산 (법적 절차)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개인의 총재산을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변제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잔여채무 면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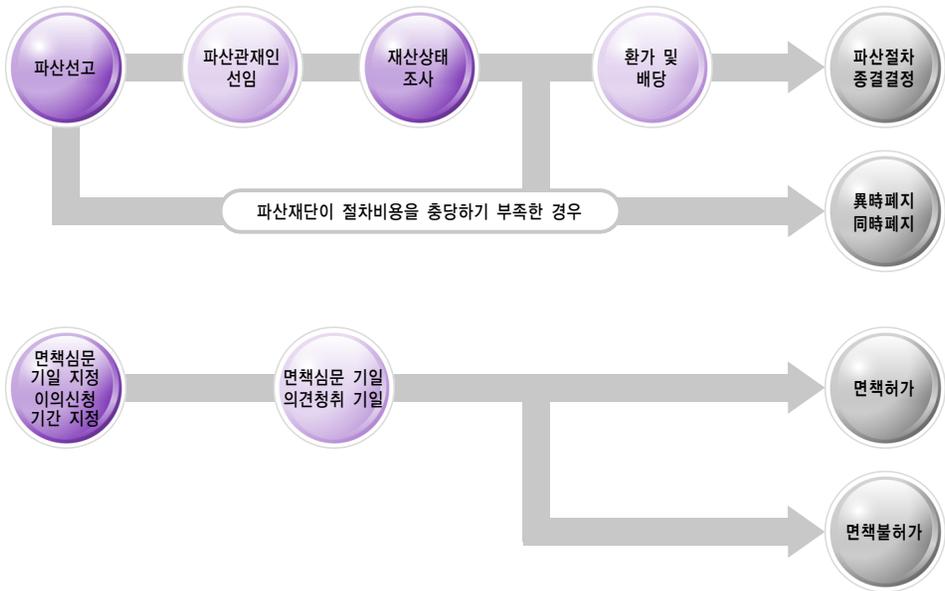
- 신청대상 :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
- 수혜내용 : 보유자산을 모두 정리하여 채무를 상환한 후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고, 면책 결정된 채무는 상환의무 소멸됨
 - * 면책되지 않은 채무는 상환 의무 있음
- 신청방법 : 채무자가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구 분	관 련 서 류
신 청 서	개인파산절차(면책절차) 개시신청서
채 권 자 자 료	개인파산 채권자 목록
재산증명자료	재산목록,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수입·지출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소득증명자료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서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진술서 및 확인서
진 술 서	현재의 직업, 경력, 수입과 생활상황, 부채상황 및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경험, 개인파산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신분증명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Quick Menu의 [양식모음]에서 확인

- 담당기관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별표 5] '지방법원의 관할지역' 에서 확인)

■ 신청절차 :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4개월 ~ 1년 소요



- ▶ 인지 및 송달료(채권자 수에 비례하여 증가), 파산관재인 보수 등 비용 발생
- ▶ 개인파산 면책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부터 5년 내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결정 불허 결정을 받을 수 있음
- ▶ 채무자의 재산 총액이 5억원 미만이면 간이파산(44pg Q&A 참고)

■ 확인사항

- 대상채무 :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
- 신용정보 : 면책결정시 모든 “연체 등” 정보 해제, “면책결정자” 정보 등재
 - * “면책결정자”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삭제
- 파산선고의 불이익 : 법적·경제활동 제한, 신용조회시 노출

Q&A

* 면책과 복권이란?

- 면책 : 파산절차에 의해 상환되지 못한 잔여 채무를 법원의 재판에 의해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
- 복권 : 파산선고시 면책이 불허되거나, 면책신청을 신청하지 못한 상황에서 채무 전부를 변제할때 복권신청과 법원의 심리 절차를 거쳐 복권하고 모든 공적, 법적 불이익 없이 파산선고 이전상태로 돌아감

Q&A

* 간이파산이란?

-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간이파산 결정을 하게 됨
- 간이파산은 정규파산절차와 비교하여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하고, 배당을 1회로 마무리하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됨

★ [연계지원제도] 무료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 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 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법률상담 후 신청
(전화 : 132, 홈페이지 : www.klac.or.kr)

참 고 3

개인 채무조정제도 비교표

	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시행시기	2009.04.13	2002.10.01	2004.09.23	1962.01.20
대상채권	협약가입 금융기관 보유채권	협약가입 금융기관 보유채권	제한없음 (사채포함)	제한없음 (사채포함)
채무범위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제한없음
대상채무자	30일초과 90일미만 연체자	3개월 이상 연체자	계속적 소득이 있는 과다채무자	파산원인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채무조정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체이자 감면 • 상환기간 최대 10년 연장 • 최장 1년 상환유예 • 약정이자율 30%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50% 감면 • 상환기간 최대 10년 연장 • 최장 2년 상환유예 	5년 이내 채무변제	청산 후 면책
법적효력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 완료 시 면책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 완료 시 면책	변제완료 시 법적 면책	청산 후 법적 면책
은행연합회 정보 해제시기	미등록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변제계획 인가 시	면책 결정 시
은행연합회 공공정보 내용	미등록	신용회복지원 중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은행연합회 공공정보 삭제시기	미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변제 완료시 • 신용회복지원 확정 이후 2년 이상 변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변제 완료시 • 개인회생인가이후 최장 5년간 변제시 	면책 결정 후 5년 경과 시

중소기업 재기(再起) 및 채무조정 제도

발행인 중소기업청

발행일 2013년 6월

발행처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Tel. 042)481-8938 Fax. 042)472-3282